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유형의 분류

1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

2 |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자기방임)
- 유기

1.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유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이나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일(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고함,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있는데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를 가로챈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알아보기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 알아보기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기방임 대표적 행위

- 노인 스스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지속

예측징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노인 스스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의식주를 거부함
- 자살을 시도함
- 우울감과 무기력함

알아보기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예측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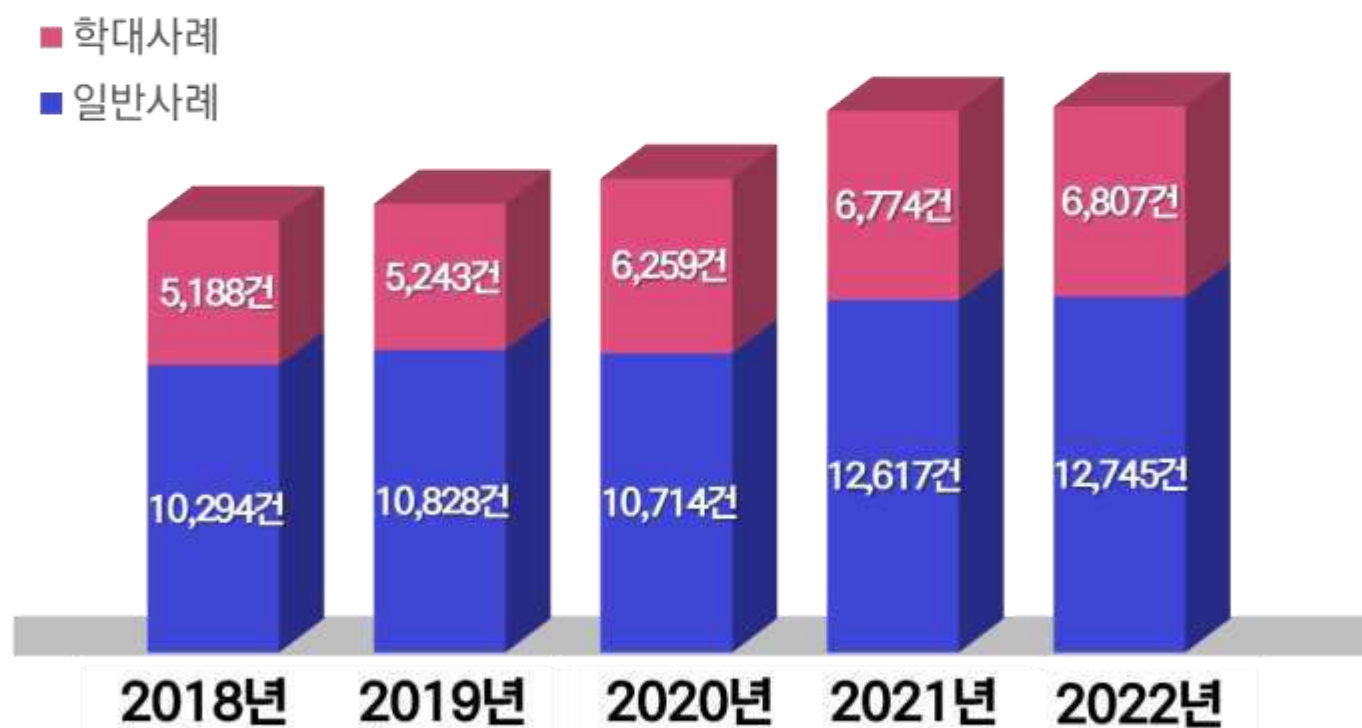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2022 노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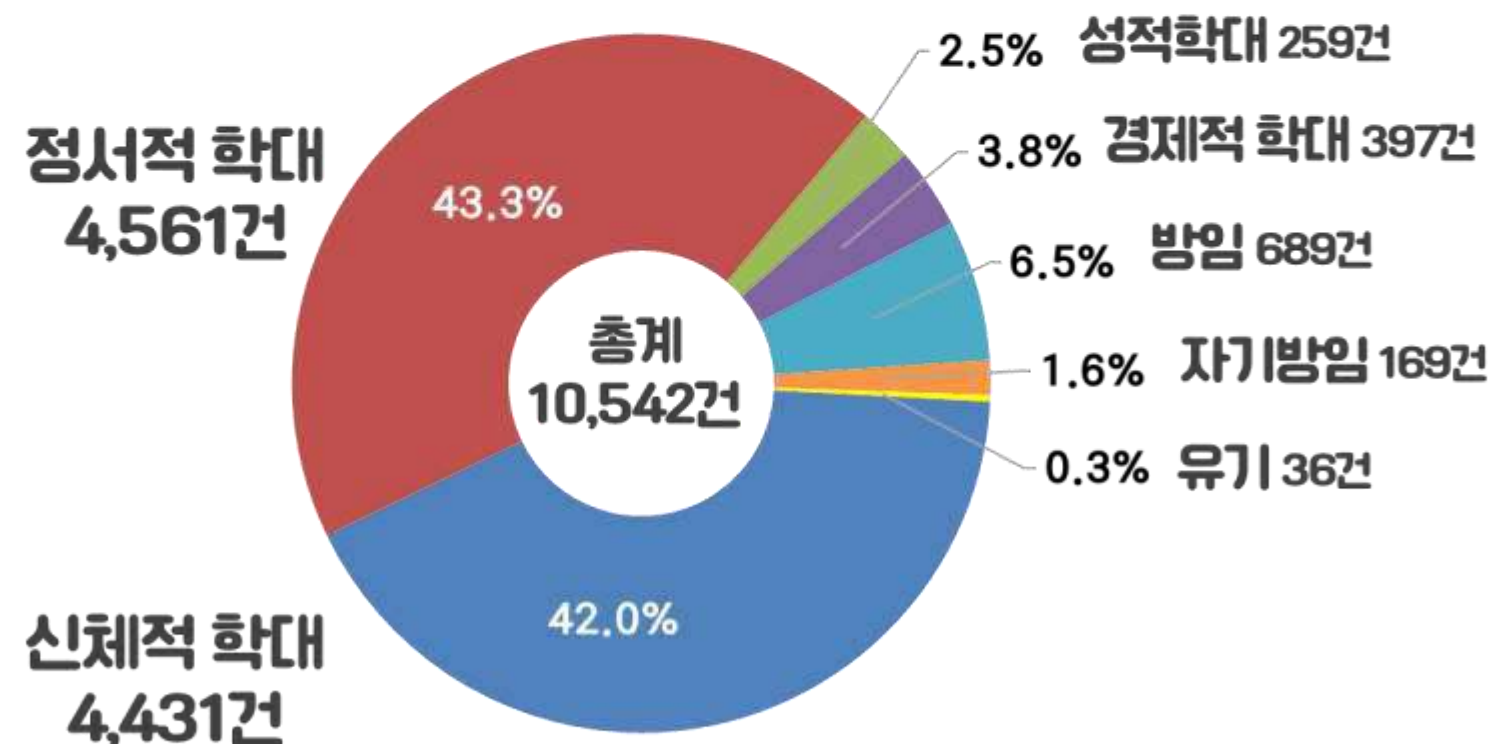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건수

전체 신고건수 | 19,552건, 노인학대 판정건수 | 6,807건 (신고대비 34.8%)



연도별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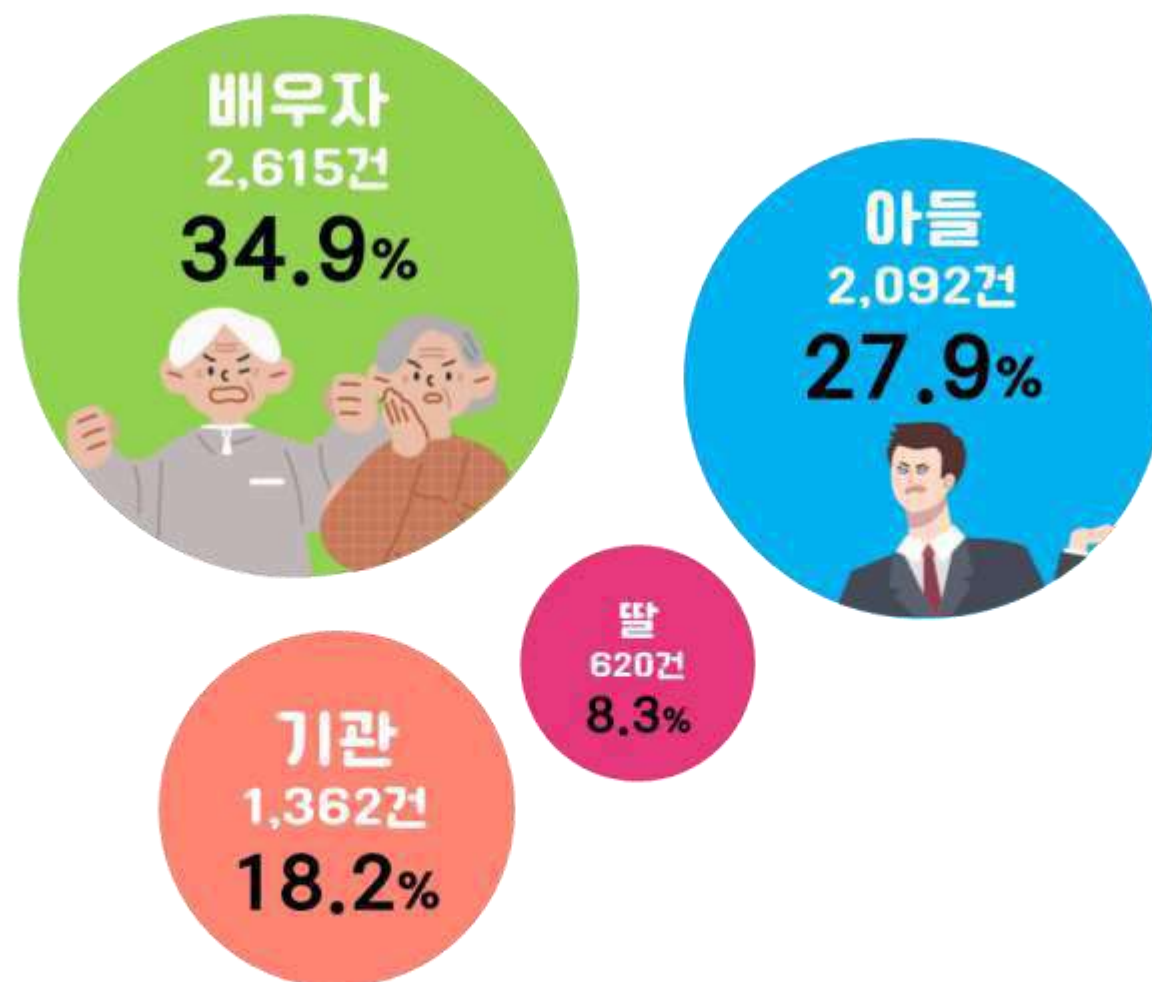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 중복학대 건 포함하여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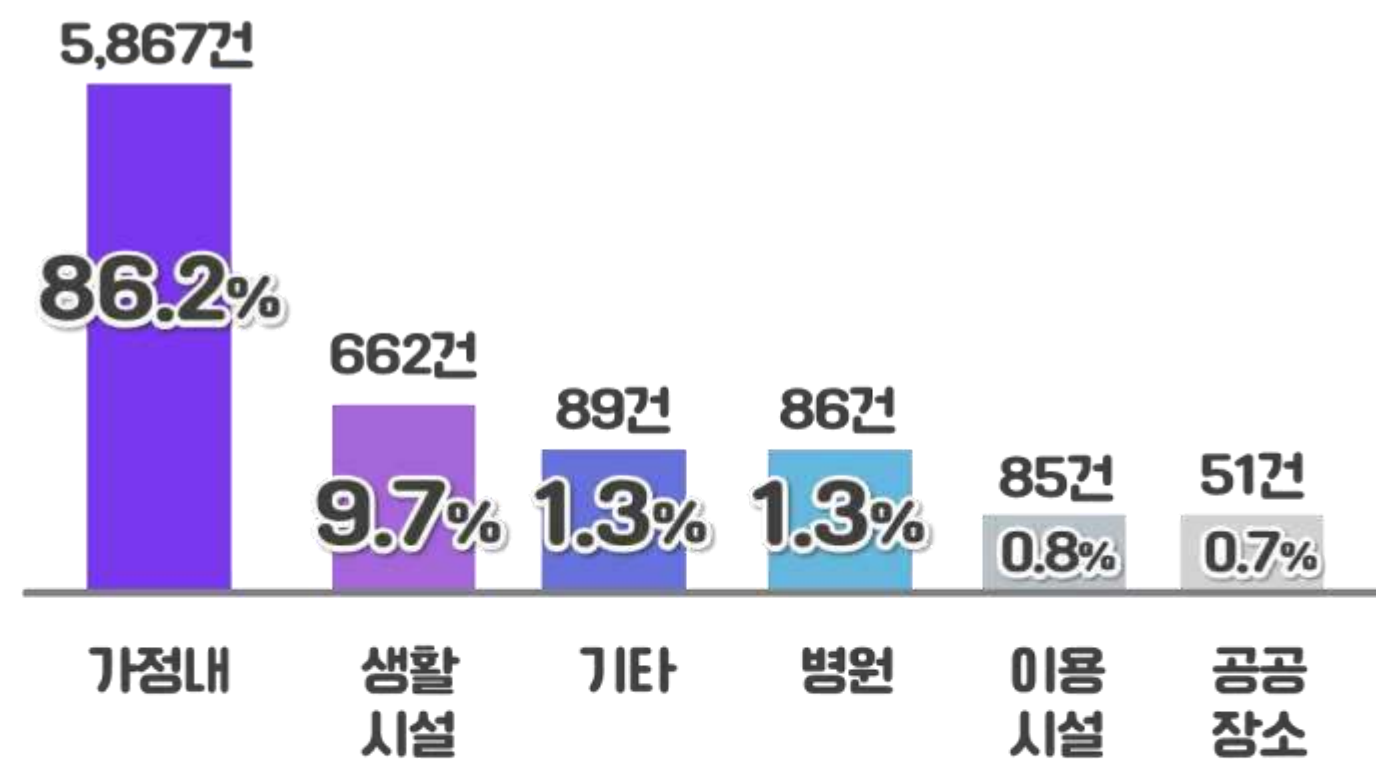
2022 노인학대 현황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 발생 장소



기억하기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신체적 학대

사례

알콜 중독 증상이 있는 김할머니는 남편인 박할아버지가 술 값을 주지 않는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폭력을 행사하며, 술 값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였다.



알콜 중독 증상으로 인한
무리한 요구



폭력행사, 위협



경찰(112)신고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노인학대 신고결과

- 김할머니(학대행위자) : 지속적 상담치료 + 중독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박할아버지(학대피해노인) : 병원치료, 박할아버지 본인 동의하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정서적 학대

사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 할머니는 큰 딸 집에서 생활하였다. 큰 딸 부부와 손자는 임 할머니의 면전에 “노인네가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빼먹으려고만 하네, 오래 살아서 뭐하실려고 자꾸 움직이려고 해?” “병원비며 약 값이며 드는 돈이 많아서 우리가 쓸 돈이 없네”라며 수시로 눈치를 주고 악담을 하였다.



노인학대 신고결과

- **큰딸부부와 손자(학대행위자)** :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실시
- **박할머니(학대피해노인)** : 주2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진행

기억하기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성적 학대

사례

A시설에서는 개방된 장소인 화장실 앞 통로에서 기저귀 케어를 실시하거나, 별도 가림막 없이 입소 노인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번에 목욕 케어를 실시하였다. 노인들은 수치스럽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으나 그 의견은 존중되지 않았다.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
또는 목욕케어 실시



수치스럽다는 입소노인의
의견 묵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노인학대 신고결과

- **A시설(학대행위시설)** : 성적학대 판정으로 인한 “지정 취소”
- **전체 입소노인(학대피해노인)** : 입소노인 타시설로 전원 이전

기억하기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경제적 학대

사례

거동이 불편한 윤할아버지는 친누나를 통해 동네 지인을 소개 받아 병원이나 외출 시 보조를 받았다. 도움을 받은 지 반년쯤 지나자, 지인은 갑자기 무리한 사례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혹, 윤할아버지가 마트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도와주는 나한테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 좀 삽시다.” 하며 5만원, 10만원 씩 돈을 빼앗곤 했다.



친누나를 통해 동네 지인을 소개
받아 병원이나 외출 시 보조를 받음



무리한 사례비 요구,
지속적인 현금 갈취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수사기관에 의뢰

노인학대 신고결과

- **지인 (학대행위자)**: 경찰수사(범죄혐의 입증 및 처벌을 위한 수사 진행)
- **윤할아버지(피해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윤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기억하기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방임

사례

B시설에 입소한 최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어느 날 어르신이 침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시도하다가 낙상하였고, 시설은 이를 바로 확인하였으나 외관 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하지 않았다. 어르신은 “아야.. 아야..” 하며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도 조금만 만지면 소리를 내왔던 어르신이라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갑자기 어르신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대퇴부 골절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되었다.



최할머니 배회증상으로 인한
시설내 낙상사고



발견 후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 시행 X,
보호자에게 사고사실 안내 X



낙상으로 인한
고열로 응급실 이송

노인학대 신고결과

- B시설 (학대행위시설): 방임 학대 판정(업무정지 3개월)
- 최할머니(학대피해노인): 대퇴부 골절로 인한 입원 치료 후 타시설 입소

기억하기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 유기

사례

자녀들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권할머니는 시설생활 부적응으로 퇴소하기로 하였으나, 모든 자녀들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시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소 전 거주했던 집으로 찾아갔을 땐 집이 모두 처분된 상태였다.



노인학대 신고결과

- **자녀들(학대행위자)**: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실시
- **최할머니(학대피해노인)**: 학대피해노인 욕구에 따라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거주지 마련,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연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신고하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1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3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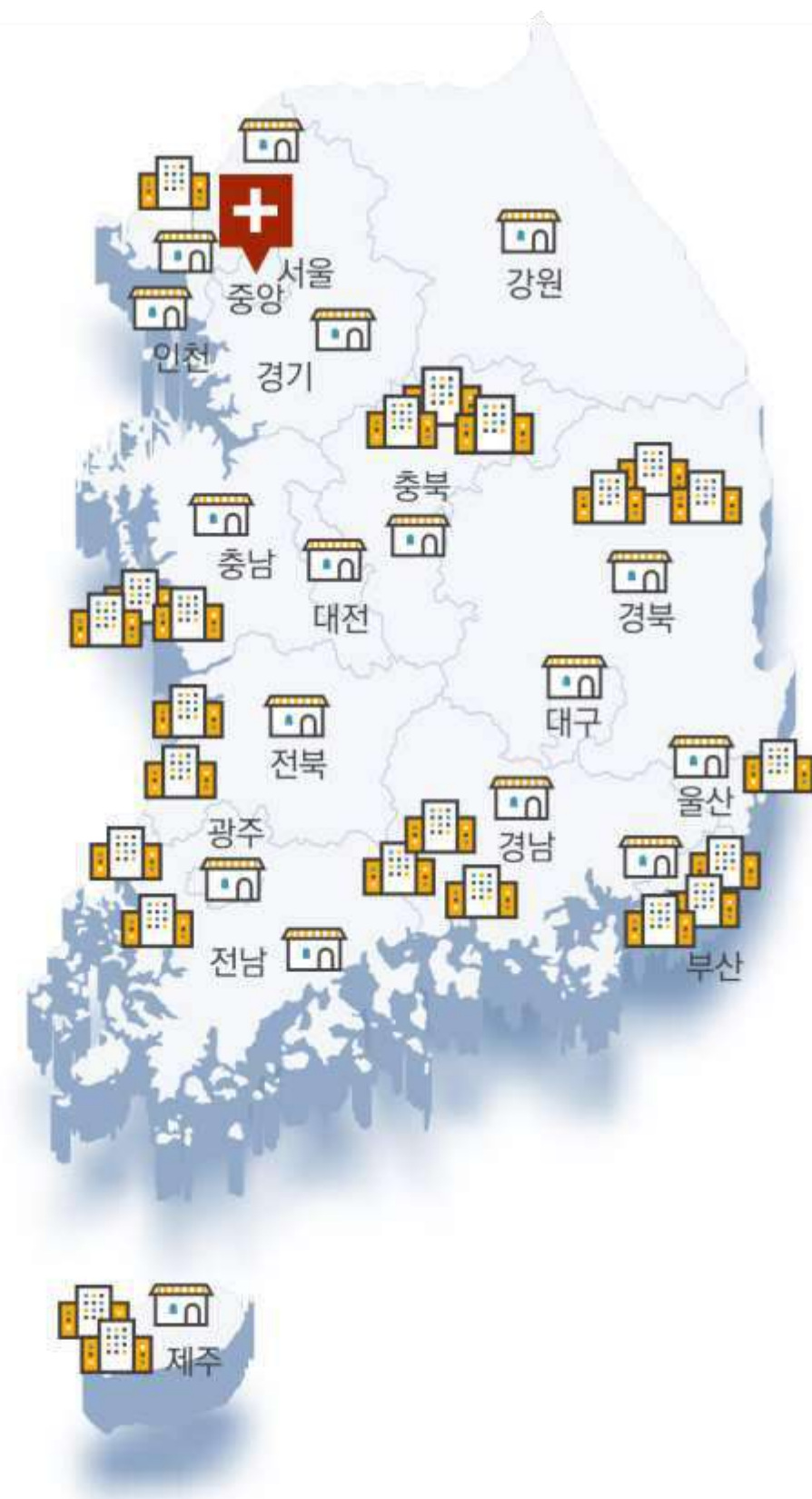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
20개소



*2023. 12. 기준



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고 계시나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법(약칭)	조 항	직 군
의료법	제3조제1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 제7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대상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7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법(약칭)	조 항	직 군
119법	제10조	119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법	제36조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제1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1항 제10호라목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자)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단위: 건, %)

의료인 및 의료 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 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 의 구급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계
18	20	298	6	59	211	9	42	1	1	-	6	-	-	29	9	155	261	1,125
1.6	1.8	26.5	0.5	5.2	18.8	0.8	3.7	0.1	0.1	-	0.5	-	-	2.6	0.8	13.8	23.2	100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이후 수치임(시행: '22.3.22.)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접수 경로

(단위 :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5	44	45	3,891	17	1	27	2	149	16	2,371	13	34	165	27	6,807
0.1	0.6	0.7	57.2	0.2	0.0	0.4	0.0	2.2	0.2	34.8	0.2	0.5	2.4	0.4	100

• 신고접수 유형

(단위 : 건, %)

대면	서신	온라인	전화	계
280	4,371	75	2,081	6,807
4.1	64.2	1.1	30.6	100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면 기억해주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 의무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교육의 의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면 기억해주세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



신고자 보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노인학대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세!

신고	노인학대 목격 및 의심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인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기억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기


노인학대 신고 시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또는 112

신고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의심노인 관련 정보

학대피해의심 노인 인적사항:

- 이름, 연락처 등

학대피해의심 노인 현재 상황:

- 안정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학대 관련 정보

학대의 구체적 내용:

 - 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01

**학대 의심 및
목격**



*응급상황 시
어르신의 안전 확보

02

**노인학대
신고**



03

**조사 및
사례개입 시
협조**



04

(필요 시)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1)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3)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직군의 참여

-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실천하기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나비새김(노인지킴이) APP을 통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15일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가 출시되었습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소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 (최소한의 정보: 핸드폰 번호)
위치기반의 도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아이콘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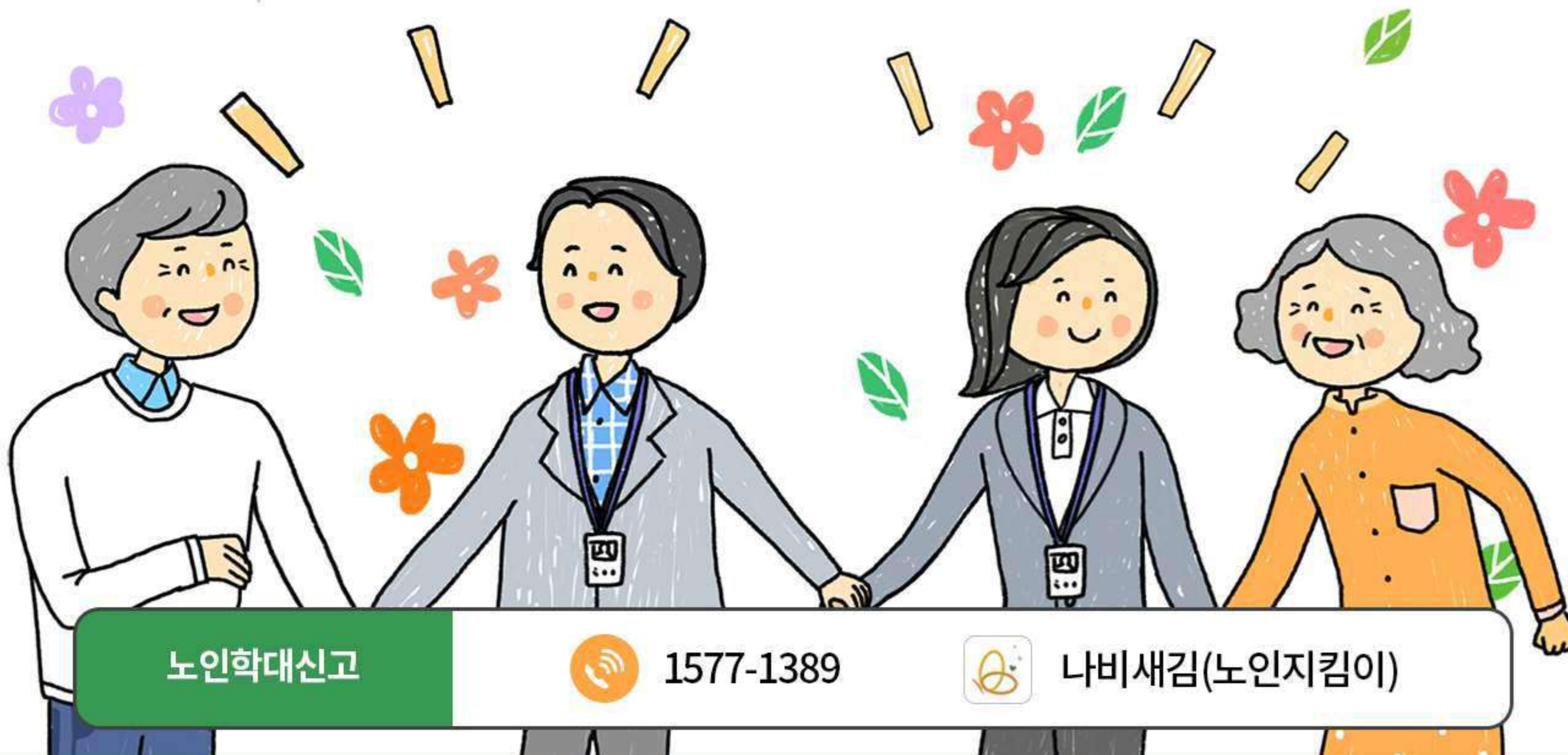
1577-1389로 전화하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역	구분	연락처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3472-1389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921-1389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3157-6389
	서울특별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470-1389
부산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1)468-8850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1)867-9119
대구	대구광역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3)472-1389
	대구광역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3)357-1389
인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032)426-8792~3
	인천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2)569-0533
광주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062)655-4155~7
대전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042)472-1389
울산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052)265-1389
경기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736-1389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821-1461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2)683-1389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031)268-1389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978-1389

지역	구분	연락처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033)253-1389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3)655-1389
	강원특별자치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3)744-1389
충청북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43)259-8120~2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43)846-1380~2
충청남도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041)534-1389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41)734-1389
전라북도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63)273-1389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63)542-1389
전라남도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61)753-1389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61)281-2391
경상북도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248-1389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655-1389
	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436-1390
	경북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3)716-1389
경상남도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055)222-1389
	경상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5)754-1389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064)757-34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64)763-1999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